

202.53호

행정명령

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

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명령(Executive Order)을 발령함에 따라,

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

따라서 오늘 저 Andrew M. Cuomo 뉴욕 주지사는 주 비상시 법률, 조례의 특정 조항, 명령, 규칙 또는 어느 기관의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를 극복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,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,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, 그러한 조항을 일시 정지 또는 수정시키기 위해 행정부 법(Executive Law) 제2-B조 제29-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,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조세재무부(Tax and Finance) 커미셔너에 의한 벌금 없이 판매 및 이용세의 연장을 허가하는 것을 제외한 행정명령 202.22호부터 202.26호 및 202.32호로 발령된 법률 및 지침, 또한 행정명령 202.44호 및 행정명령 202.45호에 포함된 것과 같이 202.33호, 202.34호 및 202.35호로 발령된 법률 및 모든 지침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2020년 8월 20일까지 지속합니다.

또한, 비상사태 동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어떠한 지침도 발행할 수 있는 행정부 법 2-B조의 제29-a항이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의거해 이번 행정명령 일자로부터 2020년 8월 20일 목요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발행합니다.

- 행정명령 202.3, 202.4, 202.5, 202.6, 202.7, 202.8, 202.10, 202.11, 202.13, 202.14, 202.28, 202.31, 202.34, 202.35 및 202.41호의 조항을 연장한 행정명령 202.45호에 포함되어 각각 공공 또는 민간 사업체 또는 공공시설을 폐쇄하거나 제한하고, 보건부(Department of Health)가 설정한 공중보건 및 안전 기준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주 재개 4단계에 진입하도록 지역을 허가한 지침은 이로써 후에 향후 행정명령에 따라 개정 또는 연장되지 않는 한 계속됩니다. 이는 2020년 7월 20일자로 뉴욕시 지역이 4단계 산업의 재개에 요구되는 규정된 공중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, 해당 지역의 소매 쇼핑물 및 저위험 실내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의 실내 공용 구역 부분은 폐쇄를 유지해야 합니다.
- 또한 주 재개 4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공중보건 및 안전 기준을 충족한 지역에서 소매 쇼핑물의 실내 공용 부분을 열 수 있도록 한 행정명령 202.50호에 포함된 지침은 이에 따라 쇼핑물의 실내 공용 부분은 뉴욕시 지역에서 폐쇄 상태를 유지하도록 개정됩니다.

2020년 7월 21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

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

선포합니다.

주지사

주지사 비서